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:한병도·김영배·정일영

김승원 • 이수진 • 이형석

이용빈 · 김민철 · 전용기

최기상 · 김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5제3항).

법률 제 호
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의5제3항 중 "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"을 "사법경찰관의 불송 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판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5(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	제2조의5(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
간 계산 등) ①·② (생 략)	간 계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
	음)
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	③
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	사법
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	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
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	불기소나 법원의 무죄판결
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	
산입한다.	